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초1지역 김혜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97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광복 74년이 되는 해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어, 서울특별시 차원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근거를 두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